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1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최수진

조지연 · 김종양 · 이종욱

김선교 • 서일준 • 박대출

김기현 • 한기호 • 김민전

강선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공사계약으로 한정한다)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역업체"라 한다)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
- 2.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 인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는 공동

수급체 중 그 밖의 구성원 업체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한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지역업체의 요건, 그 밖에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동계약) ① (생 략)	제25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
<신 설>	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공사계약으로 한정한 다)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역업체"라 한다)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

<신 설>

<u>②</u> (생 략) <신 설>

- 2.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 는 공동수급체 중 그 밖의 구 성원 업체의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 다.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지역 업체의 요건, 그 밖에 공동계약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